

10. 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개정령

건설교통부령 제220호 1999. 12. 8

개정 이유

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되는 2002년월드컵축구대회경기장 및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경기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경기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경기장안에 쇼핑센터 및 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만으로 주택의 증축·개축 또는 대수선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주요 골자

- 가.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되는 2002년월드컵축구대회경기장과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경기장에 슈퍼마켓·일용품소매점·음식점·공연장·전시장 및 쇼핑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기장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(제7조제1항제3호허목, 제7조제1항제6호커목 신설)
- 나. 종전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과 부속건축물의 증축·개축 및 대수선은 시장·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사하는 부분의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때에는 신고만으로 이를 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함(제7조제3항제1호의2 신설)

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3호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허. 도시공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시설

- (1)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 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하는 것 (간이골프장·골프연습장·일반음식점 및 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)
- (2)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공원(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장시설에 한한다)에 설치하는 것(간이골프장·골프연습장 및 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.)
- (3) 기념비

제7조제1항제6호에 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커. 제3호쿠목(1)·(3)·(4) 및 동호기목의 시설안에 설치되는 다음의 시설

- (1) 슈퍼마켓·일용품소매점·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
- (2) 공연장 및 전시장
- (3)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및 관

련사무실·선수전용숙소

- (4)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 또는 쇼핑센터로서 매장면적(대형점과 쇼핑센터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) 및 부대시설(기계실 및 창고를 포함한다)의 연면적이 각각 1만6천5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
- (5) (1) 내지 (4)의 시설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주차장의 지하에 이를 설치하되, 당해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증축을 위한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.

제7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주택 또는 부속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인 증축·개축 및 대수선. 이 경우 주택 또는 부속건축물의 기존면적과 증축으로 증가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은 제1항제2호나목 또는 동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또는 부속건축물의 규모에 적합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주택회보